

투자신탁 신탁약관 변경 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31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1 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탁약관을 변경합니다.

1. **변경사유** : 2007년 12월 28일 동법 시행령 제 75 조 제 2 항 제 6 호 개정 사항 반영
 -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로 “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가 추가됨.

변경 전	변경 후
<p>제 7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p> <p>②법 제 90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약관에 정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5. (생략)</p> <p>6.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일부터 3 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p> <p>③ (생략)</p>	<p>제 7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및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일부터 3 영업일을 초과한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2. **변경대상 투자신탁명** :

- 봉쥬르 그레이트 이머징 주식 투자신탁-자(H)
- 탐스 글로벌 리츠 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신한 BNPP 글로벌멀티에셋사모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신한 BNPP 글로벌멀티에셋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탐스 글로벌밸런스혼합투자신탁 제 1 호
- 신한 BNPP 봉쥬르 남아프리카주식 모 투자신탁
- 신한 BNPP 동남아시아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동남아시아주식 투자신탁- 자(H)
 신한 BNPP 봉쥬르 동유럽플러스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동유럽플러스주식투자신탁- 자(H)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주식투자신탁- 자(H)
 신한 BNPP 봉쥬르 미국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미국주식투자신탁-자(H)
 신한 BNPP 봉쥬르클린월드 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주식 모 투자신탁
 봉쥬르 브라질주식 투자신탁-자(H)
 신한 브릭스주식 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플러스 주식-자(H)
 신한 BNPP 아시아 4 스타주식 모재간접 투자신탁
 신한 BNPP 아시아 4 스타주식 재간접투자신탁- 자(H)
 봉쥬르양광이머징아시아 주식투자신탁-자(H)
 신한 BNPP 오대양육대주 주식 모재간접투자신탁
 신한 BNPP 오대양육대주 주식재간접 투자신탁-자(H)
 신한 BNPP 유럽배당사모혼합 자 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주식 모 투자신탁
 봉쥬르유럽배당 주식 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주식투자신탁 제 2 호-자(H)
 신한 BNPP 이머징마켓채권 재간접 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인디아 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인디아 주식 투자신탁-자(H)
 봉쥬르 인터내셔널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일본알파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일본알파 주식 투자신탁-자(H)
 탑스 일본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 중남미플러스주식 모 투자신탁
 신한 BNPP 봉쥬르 중남미플러스 주식 투자신탁-자(H)
 봉쥬르 차이나 주식 투자신탁 제 1 호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주식 모 투자신탁
 봉쥬르 차이나주식투자신탁 제 2 호
 신한 BNPP 봉쥬르 친디한주식 투자신탁-자(H)
 신한 BNPP 봉쥬르 클린월드 주식 투자신탁-자(H)

3.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2008년 5월 [30]일부터 해당 변경 사항을 시행함.

4. 신탁약관별 변경 주요 내용

< 봉쥬르 그레이트 이머징 주식 투자신탁 - 자(H)>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p>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탑스 글로벌 리츠 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글로벌멀티에셋사모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u></p>

	<p>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u>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글로벌멀티에셋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u>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u>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탑스 글로벌밸런스혼합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부 칙 5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남아프리카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 칙 5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동남아시아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BNPP 동남아시아주식 투자신탁- 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동유럽플러스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BNPP 봉쥬르 동유럽플러스주식투자신탁- 자(H)>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u>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BNPP 봉쥬르 러시아주식투자신탁- 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미국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BNPP 봉쥬르 미국주식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클린월드 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BNPP 봉쥬르 브라질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봉쥬르 브라질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신한 브릭스주식 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플러스 주식-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아시아 4 스타주식 모재간접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아시아 4 스타주식 재간접투자신탁- 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	--

< 봉쥬르양팡이머징아시아 주식투자신탁-자(H)>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2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오대양육대주 주식 모재간접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2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오대양육대주 주식재간접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2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유럽배당사모혼합 자 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2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봉쥬르유럽배당 주식 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5 (변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유럽배당주식투자신탁 제 2 호-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

운용지시 등)	<p>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이머징마켓채권 재간접 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인디아 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p>

	<p>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인디아 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봉쥬르 인터내셔널재간접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p>

	<p>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일본알파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일본알파 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p>

	<p>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탑스 일본주식 재간접 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 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 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중남미플러스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 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 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p>

	② ~ ④ <생략>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중남미플러스 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부 칙 3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봉쥬르 차이나 주식 투자신탁 제 1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 외화표시자산의

	<p>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7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차이나 주식 모 투자신탁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단기대출 또는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5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봉쥬르 차이나주식투자신탁 제 2 호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p>

	<p>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또는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5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친디한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

< 신한 BNPP 봉쥬르 클린월드 주식 투자신탁-자(H) >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9조 (자산 운용지시 등)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p>	<p>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단기대출,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또는 외화표시 자산의</p>

	<p>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선물환거래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부 칙 (변 경)	<p>신설</p>	<p>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시행·적용 한다.</p>